

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9. 12. 2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1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12월 4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8회(정기회) 제12차 위원회(1999년 12월 2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조수만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,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우리 구 관내 대림3동 소재 산성어린이공원이 지역여건상 연결된 산성교회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,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다수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,
- 기능이 쇠퇴한 기존 공원용지를 용도폐지하여 비슷한 규모의 여건이 양호한 산성교회 소유 인근 대지와 교환한 후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본 교환계획을 2000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,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속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의 기능회복 및 주민의 편익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송성만)

본 관리계획(안)은 우리 구 소유 공원용지인 대림3동 751-20에 위치한 398㎡(120평)의 산성어린이공원이 지역여건상 연결된 산성교회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기능이 저해되며 민원이 제기되는 바, 모가 비슷한 산성교회 소유의 대림3동 752-60, 61, 62호 등 3필지 412㎡(125평)의 토지와 교환하면 경제적으로 토지가격이 813만원 정도 높고 교환조건도 유리하며, 토지의 형상이나 입지요건이 기존 공원에 비하여 양호하며, 또한 민원해소 등의 효과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 안
번 호

105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9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,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우리 구 관내 대림3동 소재 산성어린이공원이 지역여건상 연결된 산성교회의 후문 출입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,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다수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
- 기능이 쇠퇴한 기존 공원용지를 용도폐지하여 비슷한 규모의 여건이 양호한 산성교회 소유 인근 대지와 교환한 후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본 교환계획을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,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속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의 기능회복 및 주민의 편익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.

3.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 (목록 : 별첨)

- 교환취득(현재 산성교회소유 재산)
 - 대 상 : 대림3동 752-60, 61, 62 [1건, 3필지, 413㎡(125평)]
 - 예정가 : 344,442천원(평당 2,757천원)
 - 기 타 : 지상 주택3동
- 교환처분(현재 우리 구 소유 공원용지)
 - 대 상 : 대림3동 751-20 [1건, 1필지, 398㎡(120평)]
 - 예정가 : 336,310천원(평당 2,793천원)
 - 기 타 : 지상 은행나무의 1종 6주, 펜스 16경간.

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(안)

- 공원은 주민에게 휴식 및 레저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 구 관내 「산성어린이공원」(구 소유, 대림3동 751-20 소재)은 위치 및 주변여건상 현실적으로 연결된 산성교회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
- 이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여 공원으로서의 제반여건이 보다 양호한 산성교회 소유의 인근 토지와 우리 구 소유의 기존공원용지를 용도폐지한 후 상호 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의 기능회복, 주민 이용률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,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다.

□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제상 재산 (목록 : 별첨)

- 교환취득(현재 산성교회소유 재산)
 - 대 상 : 대림3동 752-60, 61, 62 [1건, 3필지, 413㎡(125평)]
 - 예정가 : 344,442천원(평당 2,757천원)
 - 기 타 : 지상 주택3동

- 교환처분(현재 우리 구 소유 공원용지)
 - 대 상 : 대림3동 751-20 [1건, 1필지, 398㎡(120평)]
 - 예정가 : 336,310천원(평당 2,793천원)
 - 기 타 : 지상 은행나무외 1종 6주, 펜스 16경간.

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												
회계명 : 일반회계			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						(단위 : 천원)			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	1	3필지 413㎡	344,442				1	3필지 413㎡	344,442	*대림3동 752-60(175㎡) 752-61(119㎡) 752-62(119㎡) 면적계 : 413㎡ *소유자:대한예수교장로회, 대한예수교장로회산성교회 *토지현황 - 4m도로와 인접 대지 - 부지모양이 직사각형으 로 토지활용 용이
		건물										
	1. 매입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2. 기타 취득 (교환)	토지	1	3필지 413㎡	344,442				1	3필지 413㎡	344,442	
		건물										
처 분	계	토지	1	1필지 398㎡	336,310				1	1필지 398㎡	336,310	*대림3동 751-20(398㎡) *소유자 : 영동포구 *토지현황 - 위 공원용지 일부를 사 실상 교회 진입로로 사 용. - 공원의 토지모양이 부정 형으로 공원용지가 교회 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 임.
		건물										
	3. 매각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4. 기타 처분 (교환)	토지	1	1필지 398㎡	336,310				1	1필지 398㎡	336,310	
		건물										

2000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 표시				교환 대상 수량	추정가액	교환시기	교환사유	교환 대상자	비 고				
	구분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량										
1 건	처분 취득	대 지 (공원 용도폐지)	대림동 751-20		398	336,310	2000. 1.	- 대림동소재 산성어린이공원이 지역여건상 연결된 산성교회의 후문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기능상 문제가 있고, 주민이용에 불편 - 인근 주민의 교환요구 다수 민원	대한예수교장로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산성교회					
		대 지	대림동 752-60외 2	413	413	344,442								
	토지	대 지 (공원 용도폐지)	대림동 751-20		398	336,310					2000. 1	"	"	
		대 지	대림동 752-60외 2	413	413	344,442								
계	건물	처분 취득												
	기타	처분 취득												

교환(취득·처분)대상 재산현황

1. 교환대상 토지현황

(단위 : m²)

구 분	취득대상 (사유지)	처 분 대 상 (구유지)	비 고
위 치	대림동 752-60(175m ²) 752-61(119m ²) 752-62(119m ²)	대림3동 751-20	
면 적	413m ²	398m ²	차 15m ²
공시지가	344,442천원(834천원/m ²)	336,319천원(845천원/m ²)	차8,132천원
시설종류	- 주택 3동	- 은행나무의 1종 16주 - 펜스 16경간	
도시계획 용 도	주거지역	공원용지	
소 유 자	대한예수교장로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성교회	영등포구	
주변여건	- 4m 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 - 교회 부속건물 3동이 있음 - 부지모양이 직사각형으로 토지활용 용이	- 교회 후문 진입로가 공원 중 양부를 관통(공원용지 일부를 사실상 교회 진입로로 사용) - 공원의 토지형상이 부정형임. - 공원용지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형 태임.	

2. 교환추진 경위

- '99. 1. 19. : 다수인 민원접수(대립3동 유달영외 292인)
- 인근 대지와 교환하여 공원조성 요망
- '99. 2. 2.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계획 구청장 방침
- 산성어린이공원 용지(398㎡)와 인근 산성교회 소유 토지(413㎡)의 도시계획사항을 상호 변경
- '99. 2. 10. :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(영등포구 공고 제1999-35호)
- 주민의견 청취
- '99. 9. 8. :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(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-284호)
- '99. 9. 13.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지적승인(영등포구 고시 제1999-58호)
- '99. 9. 21.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 통보(영등포구 → 산성교회)
- '99. 11. 4. : 토지교환 신청(산성교회 → 영등포구)
- '99. 11. 19. : 용도폐지 관련부서 협의 및 공유재산심의
~ 12. (공원녹지과 → 관련부서, 재무과)

3. 향후 추진일정

- '99. 12. . :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심의·의결
- '99. 12. . : 교환재산 감정평가 등 가격 결정
(구의회 의결후)
~ 2000. 1. .
- 2000. 1. 이후 : 교환계약 및 정산 → 소유권등기이전 및 공원 조성

4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3호, 동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및 제101조

5. 위치(현황)도 : “별첨”

